

서 면 답 변 서

소 속	평 창 군 의 회	질문위원	(지광천) 위원	
답 변 자	평 창 군 수 (허가과장)	일 자	질의	2019년 11월 29일
			답변	2019년 12월 2일
회 의	제25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일차 감사활동			

질문요지

- 용평면 이목정리 산16번지 일대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 진행상황

답변내용

- 개발행위허가부서.

위반행위 개요

- 부지위치 : 용평면 이목정리 산16(목), 171(전), 172(전), 173(목), 181-1(구거), 산31(목), 산31-3(목)
- 지역지구 : 생산관리지역, 보전관리지역
- 위반내용 :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토지형질변경 행위
- 위반면적 : 약 36,738㎡
- 위반법규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제1항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40조제1항

처리진행사항

- 국토계획법 위반사항 접수(산림과-1805, 2019.01.29.)
- 불법행위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 및 원상복구명령사전통지(허가과-2337, 2019.02.01.)
- 의견제출서 접수(허가과-2691, 2019.02.12.)
- 국토계획법 위반협약자 고발(허가과-3867, 2019.02.28.)
- 원상회복(안정화계획) 제출 및 접수(허가과-3870, 2019.02.28.)
- 원상복구(안정화)계획서 제출에 따른 보완 제출 요구(허가과-5148, 2019.03.19.)
- 원상회복(안정화계획) 제출 및 접수(허가과-12268, 2019.06.19.)
- 원상회복(안정화)계획서 승인 및 접수(허가과-14725, 2019.07.19.)
- 원상회복(안정화)계획서 승인에 따른 인허가 신청 독촉(허가과-3092, 2019.10.24.)
- 국토계획법 위반협약자 고발내용 보완(허가과-3619, 2019.10.30.)

※ 행정사무감사 자료 취합과정에 국토계획법 위반자 고발 내용이 누락되었으며, 본 무단형질변경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진행 중이며, 별도의 안정화 계획을 통한 배수로 정비 및 법면안정화 등 위험요소 제거를 통해 안정화조치 진행 중.

○ 산림과

□ 처리개요

- 피 의 자 : 최○○
- 피해시기 : 2018.11.~2019.01.
- 피 해 지 : 이목정리 산16(목), 산14-1(임), 산15(목), 산15-1(목), 산30(임)
- 위반법령 :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
- 피해규모 : 면적 15,193㎡, 소나무 26본 굴취, 활엽수 79.5㎡ 벌채
- 피 해 액 : 36,893,000원
- 범죄인지 : 2019. 03. 28.
- 송치일자 : 2019. 05. 23.
- 처 분 일 : 2019. 10. 15.(처분관서 :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)

□ 사건처리 근거

- 초지에서 해제되었으나 지목이 목장용지인 산지에 대한「산지관리법」 및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적용 여부에 대하여 산림청에 법령 질의한 결과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만 적용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아 굴취·벌채 관련 사항에 대하여 사건 처리함.(토목공사 관련 사항은 개발행위에서 별도 고발조치)